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
부과·징수 규정 신설 등>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241호)

2023.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 부과·징수 규정 신설 등	3
※ 참고자료	14
1. 환경평가대상 민간처리시설 현황 및 부담금 비용 추계	14
2. 폐촉법 개정안에 따른 주변지역지원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비교 표 ...	15

I. 제안경위

2023년 9월 5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원활한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지역 주민의 환경·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또한 특정지역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이 편중되면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

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함.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IV.검토의견

1.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 부과·징수 규정 신설 등

개정안은 ① 폐기물처리업자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하고(안 제2조 제3호 신설),

②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6조의3 신설),

③ 환경부장관이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환경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처리업자”란 폐기물 <u>처리시설(그 규모가 「환경영</u>

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추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지원 등

<신 설>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3장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

<신 설>

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
원 등

제26조의2(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또는
신고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이하 “민간 폐기물처리시
설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때에
는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
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
하여야 한다. 단, 민간폐기물처
리시설의 입지가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경계와 인접한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

<신 설>

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 고시의 절차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부과 ·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신 설>

③ 부담금 및 가산금, 연체자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6조의3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부담금 및 가산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부분¹⁾ 외에 민간 폐기물처리업

1)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2020년 주민지원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조성 금액			집행 현황				
계	전년이월	당해조성	계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	기타
344,638	231,999	112,639	133,182	18,119	98,916	1,756	14,390

자료: 환경부

자에 대한 정의,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부담금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개정안은 ①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해양배출업자 중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대상)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 하고, ②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의무화하며, ③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복지 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지역주민 간 운영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며,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안 제2조제3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6조의2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지자체 장 또는 주민요구로 공청회 개최)
안 제26조의3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부과·징수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안 제26조의4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개정안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비교]

구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안
대상시설	<p>① 공공시설*</p> <p>*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p>	<p>① 공공시설+</p> <p>②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시설*</p> <p>* ㉠ 100톤/일 이상 소각시설</p> <p>㉡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또는 매립용적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 지정 외 폐기물 매립시설,</p> <p>㉢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또는 매립용적 25만 세제곱미터 이상 지정폐기물 매립시설</p>
영향범위	<p>① (공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결정·고시하는 지역</p> <p>* (소각) 부지경계~ 300미터 이내 (매립) 부지경계~ 2킬로미터 이내</p>	<p>① (공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결정·고시하는 지역</p> <p>② (민간시설)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지역</p> <p>* (소각) 부지경계~ 300미터 이내 (매립) 부지경계~ 2킬로미터 이내</p>
주민지원사업	<p>① (공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을 통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민지원사업 실시</p>	<p>① (공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을 통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민지원사업 실시</p> <p>② (민간시설) 주변지역지원부담금 등을 통한 주민지원 사업 실시</p>

자료: 환경부

또한 방폐장 유치지역이나 댐주변지역,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 공익목적의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 권리 제한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의무화하고 있는 방폐장유치지역주민지원사업, 댐주변 지역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민간의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되는 시설은 전체 16,085개 중 소각시설 53개, 매립시설 32개 등 총 85개로 추정되고, 부담금 부과대상 총액은 연간 977억원이고, 신규로 설치되는 폐기물시설(연간 4개 내외)에 대한 부담금 46억원(연간)을 합한 금액은 연간 1,023억원 규모로 추정됨(참고자료1).

[개정안에 따른 민간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적용 대상]

(단위 : 개소, 시설수)

구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시설축진법 개정안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계	16,085	85
수집·운반업	8,961	-
중간처분업	217	53
소각시설	114	53
그 외 시설(파분쇄 등)	103	-
최종처분업(매립시설)	54	32
중간재활용업	1,470	-
최종재활용업	240	-
종합재활용업	4,561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582	-

자료: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26조의2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부담금 신설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장애요인 및 폐기물처리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통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및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²⁾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³⁾에 따라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 또는 소각 시 요율⁴⁾에 따라 폐기물처

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1.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6.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출기준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가. 불연성	kg당 10원	-
	나.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분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를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1항5)에 따른 이중부과(참고자료2)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폐기물처분부담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2018	1,863	3,696	1,683	3,287	180	409	88.9
2019	20,100	209,875	19,654	204,437	446	5,438	97.4
2020	23,465	196,393	22,809	188,035	656	8,358	95.7
2021	21,008	203,118	20,241	191,965	767	11,153	94.5
2022	20,811	164,105	19,984	157,680	827	6,425 ^{주1}	96.1
합계	87,247	777,187	84,371	745,404	2,876	31,783	95.9

주1. '22년 차액 : 미납액 6,313백만원, 납기미도래 112백만원
자료: 환경부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수용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폐기물처리단가 상승, 폐기물 불법처리 유인 증가,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6)는 해당 법률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동법뿐만 아니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

※ 참고자료

1. 환경평가대상 민간처리시설 현황 및 부담금 비용 추계

□ 부담금 비용추계

① (기존시설) '21년기준 전국 민간 소각·매립시설 168개소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85개소로, 부담금 부과대상 총액은 977억원/년 규모

② (신규시설) 최근 3년간('19~'21년) 처리시설 평균 설치개수(4개/년)*를 근거로 부담금 부과대상 가정 시 부과액은 총 46억원/년 규모(개소당 평균 11.5억원)

* '19~'21년 신규설치 개수는 총 11개소(소각 6, 매립 5)로, 평균 설치개수는 4개소/년(소각 2, 매립 1.7)

⇒ 소급적용시 1,023억원/년 규모(①+②), 소급미적용시 46억원/년 규모(②)

□ 시설별 산정근거

① 소각시설

(단위 : 개소, 만톤/년, 백만원)

구 분	총 시설수 (환경평가대상)	총 허가용량 (환경평가대상)	총 처리량 (환경평가대상)	처리단가* (만원/톤)	부담금추계총액(환경평가대상) * 백만원 처리량 x 처리단가 x 10%
계	114 (53)	277.3 (162.1)	290.3 (162.7)	28.6	46,532
수도권	40 (20)	78.9 (47.2)	83.1 (47.5)	28.3	13,443
충청권	26 (12)	83.4 (55.5)	75.5 (43.1)	25.5	10,991
호남권	18 (6)	39.8 (14.9)	46.3 (17.6)	29.0	5,104
영남권	30 (15)	75.2 (44.5)	85.4 (54.6)	25.8	14,087

* 처리단가 출처 : '22년 처리단가 조사(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7~20개 사업장 및 폐기물 6~10개 대상 조사)

※ 시설수, 허가용량 및 처리량 출처 : '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

② 매립시설

(단위 : 개소, 천 m³, 천톤/년, 백만원)

구 분	총 시설수 (환경평가대상)	총 허가용량 (환경평가대상)	총 처리량 (환경평가대상)	처리단가* (만원/톤)	부담금추계총액(환경평가대상) * 처리량(톤) x 처리단가 x 10%
계	54 (32)	55,518 (38,192)	3,384 (2,484)	20.6	51,170
수도권	1 (-)	244 (-)	9 (-)	-	-
충청권	14 (6)	12,486 (7,545)	699 (343)	21.6	7,419
호남권	12 (8)	11,250 (10,573)	966 (916)	20.1	18,421
영남권	27 (18)	31,537 (20,074)	1,710 (1,224)	20.3	24,847

* 처리단가 출처 : '22년 처리단가 조사(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7~20개 사업장 및 폐기물 6~10개 대상 조사)

※ 시설수, 허가용량 및 처리량 출처 : '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

2. 폐촉법 개정안에 따른 주변지역지원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비교 표

구분	주변지역지원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근거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 제26조의3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부과 목적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과·징수														
최초 부과연도	-	2018														
납부대상	환경영향평가대상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소각·매립시설)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산정기준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 부과요율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폐기물 처리방법별 부과요율(원/kg)×산정지수														
부과요율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폐기물 유형</th> <th colspan="2">요율(kg당)</th> </tr> <tr> <th>매립</th> <th>소각</th> </tr> </thead> <tbody> <tr> <td>생활폐기물</td> <td>15원</td> <td>10원</td> </tr> <tr> <td>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td> <td>불연성 10원 가연성 25원</td> <td>- 10원</td> </tr> <tr> <td>건설폐기물</td> <td>30원</td> <td>10원</td> </tr> </tbody> </table>	폐기물 유형	요율(kg당)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원	10원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	불연성 10원 가연성 25원	- 10원	건설폐기물	30원	10원
폐기물 유형	요율(kg당)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원	10원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	불연성 10원 가연성 25원	- 10원														
건설폐기물	30원	10원														
부담금 귀속	개정안 제26조의3에 따라 부담금 징수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처리시설 설치기관(지자체 등)에서 은행이나 체신 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관리(세부사항은 조례로 위임)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 사용용도	개정안 제26조의4에 따라 지원사업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지원사업: 소득증대(농림수산업, 관광산업 등), 복리증진(의료, 상하수도 등), 육영사업(장학금 등) 등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각 호의 용도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등)														